

국제기구휴직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63조제2호 및 제83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PBT 590점 이상
		<삭 제>
		iBT 96점 이상
토픽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8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775점 이상 (NEW TEPS 435 이상)
국립외교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국립외교원 외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775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 케임브리지 대학교(UCLES;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호주 IDP 에듀케이션(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Australian University and College)에 의해 공동 개발, 관리, 운영되는 영국식 영어 능력 시험	6.5점 이상

※ 비고

1. 검정대상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 또는 근무경험이 있는 자, 검정대상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한다.